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방식의 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4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물류단지 준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준치시설부담금의 부과·납부기한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신탁계약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
(안 제24조의2 신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나. 준치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납부기한, 이의신청 기한을 규정

(안 제3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기한을 부과한날부터 6개월로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물류단지의 신탁개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 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
 - 가. 사업의 목적
 -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처분계획서

제34조의2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준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 ③ 준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④ 준치시설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치시설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부터 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의2(물류단지의 신탁개발)</u> <u>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 31조제3</u> <u>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u> <u>업자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u> <u>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u> <u>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u> <u>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u> <u>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u> <u>표자의 성명) 및 주소</u> <u>2.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u> <u>면적</u> <u>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u> <u>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u> <u>의 개요</u> <u>가. 사업의 목적</u> <u>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u> <u>다. 사업의 시행기간</u> <u>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u> <u>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u> <u>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u> <u>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u> <u>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u> <u>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u>		

제34조의2(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①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u>여야 한다.</u> <u>1. 위치도</u> <u>2. 사업계획서</u> <u>3. 자금조달계획서</u> <u>4. 처분계획서</u> 제34조의2(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u> <u>③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u> <u>④ 존치시설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u> <u>⑤ (현행 제2항과 같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 락 처	(044) 201 - 4013